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97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이종욱·송언석·이인선

박수민 • 박수영 • 신동욱

이종배 • 박성훈 • 최형두

성일종 · 송석준 · 이성권

김상훈 · 김종양 · 구자근

유한홍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당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고용취약계 층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②		
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장애인	2027년 12월 31일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			
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			
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			
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			
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			
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			
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